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지연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616

발의연월일: 2025. 3. 4.

발 의 자:조지연·엄태영·박준태

이인선 • 한지아 • 박덕흠

김소희 · 김형동 · 최수진

최은석 · 강대식 · 김도읍

임이자 · 김장겸 · 박정하

의원(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일·생활 균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유연근무가 노동시장의 새로운 경향으로 자리잡고 있고, 우리 사회가 직면한 초저출생의위기 상황에서 유연근무와 일·육아 병행이 매우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음.

현재 우리나라는 저출생으로 인하여 심각한 인구감소문제에 직면하여 다양한 저출산대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지원 혜택이 제한적이어서 아직까지 뚜렷한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어 법인세 감면과 같은 보다효과적인 지원이 필요함.

이에 자녀출산 및 양육지원, 유연근무제도, 가족친화 직장문화조성 과 같은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에 대하여 가족친 화제도 운영에 소요되는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서 감면하여 기업의 자발적인 출산·육아 친화 환경 조성을 유도하고 일 ·가정 양립 문화 확산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99조의15 신설).

법률 제 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9조의1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9조의15(가족친화인증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내국인이 근로 자의 출산·육아 및 일과 생활의 균형을 위한 근로문화 개선을 위하여 시설을 설치하거나 근무제도 등(이하 이 조에서 "가족친화제도"라 한다)을 실시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족친화제도를 실시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의 100분의 10에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 1.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경우
- 2. 가족친화제도와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인증을 받거나 관련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경우
-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족친화제도와 관련한 정부의 정책 등으로 인증·선정·포상 등을 받은 경우
- ② 제1항에 따른 세액감면은 제24조에 따른 통합투자세액공제와 중복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가족친화제도의 범위, 시설의 범위, 가족친화제도 실시에 따른 지출 비용의 계산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족친화인증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9조의
15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u> <신 설></u>	
	제99조의15(가족친화인증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내국인이 근로자의 출산·육아 및 일과 생활의 균형을 위한 근로문화 개선을 위하여 시설을 설치하거나 근무제도 등(이하이 조에서 "가족친화제도"라 한다)을 실시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족친화제도를 실시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에 따른 가족친화인증을받은 경우 2. 가족친화제도와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인증을 받거나관련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족친화제도와 관련한

 정부의 정책 등으로 인증・선

 정・포상 등을 받은 경우
- ② 제1항에 따른 세액감면은 제24조에 따른 통합투자세액공 제와 중복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 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 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가족친화제도의 범위, 시설의 범위, 가족친화제도 실시에 따른 지출 비용의 계산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